

컨설팅 업무 계약서

‘_____’를 甲으로 하고 ‘비더블유디앤씨㈜’를 乙로 해서 甲과 乙간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에 합의하고,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컨설팅]

乙은 甲의 자금조달을 받기 위한 컨설팅 의뢰에 성실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국내의 금융상품들에 대한 정보 등 자료분석 및 제반 조사 활동을 통해 甲의 자금조달시 최상의 조건이 되도록 컨설팅한다.

제2조[보수]

甲은 乙에 대해 컨설팅에 대한 보수로써 자금조달의 ____%를 지급하며 착수시 乙의 비용과 자금조달시 성공보수로 나눠 지급한다. 단, 乙의 고문(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들이 작성하여 자금조달기관에 제출되는 자금조달소견제출과 사업계획서 작성대행에 대한 보수는 성공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착수비용 지급시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乙의 귀책사유로 자금조달 실패시는 제3조의 실비와 자금조달소견제출비용,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비를 제외하고 착수비용은 반환하기로 한다.

- 착수비용 : 금_____원(W)
- 성공보수 : 금_____원(W)
- 자금조달소건제출 : 금_____원(W)
- 사업계획 작성 대행 : 금_____원(W)

제3조 [실비]

乙이 甲으로 인해 컨설팅 업무를 함으로써 지출한 착수비용 외의 경비(인지대, 송달료, 법률자문료, 대행료, 서류발급비, 현장실사비, ... 등)는 甲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乙에게 실비로써 지급한다. 세부 사항은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한다.

제4조[비용 및 보수 등 지급의 지체]

甲이 이 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를 상호간의 합의한 날짜에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乙은 업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업무를 중단한다.

제5조 [비밀유지]

乙은 갑과 관련해서 컨설팅 업무를 할 때 甲의 경영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중에는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甲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에 乙이 위반을 함으로써 甲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청구를 乙에게 할 수 있다.

제6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201__년__월__일에서 甲의 자금조달이 성공시 까지 유효하며, 甲이 자금조달을 포기할 시 즉시 乙에게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한다. 甲의 포기의사로 계약이 종료될시 乙은 착수비용과 기타 모든비용을 甲반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민법과의 관계]

甲이 이 계약에 정한 사항외에 계약사항은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8조[특약사항]

1. 甲이 乙에게 甲의 현황 또는 물건상황 및 감정가 등 자금조달에 있어 중대한 사항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여 업무에 혼선을 준 경우에는 甲은 乙이 재업무개시에 따른 착수비용을 재지급하며 실비 또한 재지급하고, 기지급된 착수비용 및 실비는 소멸한 것으로 하며, 甲乙은 乙에게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 甲은 乙이 자금조달금액중 조달기관으로부터 상기 제5조의 보수를 우선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며, ‘우선지급동의서’를 작성하여, 이 계약서와 함께 乙에게 제출한다.
3. 甲이 乙에게 상기 제2조의 성공보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甲이 乙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단, 컨설팅수행자 개인의 사업소득세 3.3% 신고로도 가능하다.
4. 甲이 乙에게 상기 제2조의 사업계획서 작성대행비, 소견비, 급행비 등은 乙이 고문기관 등 외부에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甲은 乙에게 거래증빙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5. 乙이 본 컨설팅에 필요한 경우 외부 협력기관인 ‘크리스앤코(주)’를 통하여 컨설팅을 한 경우 乙은 추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 甲은 동의하며, 때에 따라 乙을 통하지 않고 ‘크리스앤코(주)’가 甲에게 청구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 경우는 乙에게 기지급한 비용들은 甲은 乙에게 반환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서명 날인은 뒷면에...]

“첨부” 1. 우선지급동의서 1부.
 2. (상호교환)인감증명서 1부. 끝.

201 년 1월 1일

의뢰인(甲)의 주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印)

연 락 처 :

담 당 자 : (印) [생략가능]

연 락 처 : [생략가능]

컨설턴트(을)의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회 사 명 : 비더블유디앤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 주 천 (印)

연 락 처 : 02 - 2069 - 3341

답 당 자 : 강 상 진 (印) [생략가능]

연 락 처 : 010 - 8433 - 6300 [생략가능]

우선지급동의서

의뢰명 : _____ 자금조달환경 구축컨설팅

의뢰인 :

수급인 : 비더블유디앤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주천)

단위농협 355-0038-2911-33 (예금주 : 비더블유디앤씨(주))

상기 의뢰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이 성공하여 자금조달을 성공할 수 있었으므로, 자금조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자금조달금액중 수급인에게 ‘컨설팅 업무 계약서’ 에서 약속한 수급인의 보수인 총 금_____원 (₩ _____)을 자금조달기관에서 수급인이 우선 지급받은 후,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이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나 민사 또는 형사상의 문제제지가 없을 것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약하오니, 자금조달기관에서는 수급인에게 우선 지급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의뢰인 인감증명서 1부. 끝.

201 년 월 일

확약자

(사업자)

_____ (-) (개 인)

[자필서명 :]

자금조달기관 :

귀하